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326 제 안 일 자 : 2019년 2월 27일

제 안 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안 제2조제1호의 소방활동에 대한 용어정의를 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방활동의 정의와 통일시켜 사전에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, 조례가 상위기관인 소방청으로 하여금 훈령을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 은 법체계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의 의도는 소방청 훈령을 준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"소방청 훈령으로 정한다."를 "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."로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소방활동에 대한 용어정의를 "'소방활동"이란 「소방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."로 수정함. (안 제2조 제1항)
- 법체계에 맞도록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로 수정함. (안 제9조제4 항, 안 제16조)

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「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"소방활동"이란 「소방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.

안 제2조제3호 중 "「소방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5호" 를 "법 제2조제5호"로 한다.

안 제9조제4항 중 "소방청 훈령으로 정한다."를 "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."로 하고,

안 제16조 중 "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에 의한다."는 "그 밖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."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본 조례안	수 정 안
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	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"소방활동"이란 화재를 예방·경계하거나 진압하고 재난·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서의 구조·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. 2. (생략) 3. "소방대"란 「소방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한다) 제2조제5호의 소방대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"소방활동"이란 「소방기본법」(이하 "법"이 라 한다)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. 2. (조례안과 같음) 3 법 제2조제5호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~③ 생략 ④ 그 밖의 보상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 은 소방청 훈령으로 정한다.	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~③(조례안과 같음) ④
제16조(시행세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에 의한다.	제16조(시행세칙) 그 밖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.

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방기본법」,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법률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인적·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소방활동"이란 「소방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제1 항의 활동을 말한다.
 - 2. "소방기관"이란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제2조제3호의 소방기관을 말한다.
 - 3. "소방대"란 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를 말한다.
 - 4. "청구인"이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·물적 손실(이하 "손실"이라 한다)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.
 - 5.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·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및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(이하 "시"라 한다)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 소속 소방공무원(이

- 하 "소방공무원"이라 한다)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- 제4조(사실조사 및 기록유지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 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(이하 "본부장 등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·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손실보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 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 - 1.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
 - 2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 상을 입은 자
 - 3.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(다만,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)
 - 4.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
 - 5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른 구조·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
 - 6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·건축물·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
 - 7. 그 밖에 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

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

- 제6조(청구방법 및 처리) ① 청구인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[별지 제1호 서식] 보상금 지급 청구서(이하 "청구서"라 한다)를 본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시 소방재난본부장(이하 "본부장"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60일 이내에 제7조의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 여부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 부터 3년,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 - ④ 본부장은 손실보상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본부장 은 청구인의 청구서를 토대로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액 을 산정한다.
 - ⑤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결과 및 제4항에 따른 본부장의 손실보상 인정여부를 1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[별지 제9호 서식] 또는 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 서식]의거 청구인에게 통지하고,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손실보상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.

- 제7조(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청구인의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(이하 "보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보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.
 - ③ 보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.
 - 1.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 소방령
 - 2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 - 3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 - 4. 「보험업법」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
 - 5.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방경 이하 직원 중에서 보상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- 제8조(위원장) ① 보상위원회 위원장(이하,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②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
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 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의 보상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.
- 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안건의 청구인인 경우
 - 2. 위원이 심의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- 5. 위원이 심의안건의 청구법인의 임원인 경우
 -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위원의 해촉 및 해임) 시장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

할 수 있다.

- 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- 제12조(비밀 누설의 금지)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- 제13조(소송지원)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민·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시장은 손실보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
- 제15조(위원수당 등) 보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세칙) 그 밖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조례 제6459호 「서울특별시 재 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한다.